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등) ①(생략)	제7조(간사등)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u>새마을과장</u> 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u>사회진흥과장</u>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등 13개의 개별 감면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단일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9조)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세대 이상 공동주택
 -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기준 완화..... (안 제12조)
 -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 :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 → 3/1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신설) (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임대주택 감면대상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현재 구청별로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

의안번호	363
의결 년 월 일	95. 3. 28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5. 3. 1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사유

-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등으로 13개의 개별 감면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단일 조례로 통폐합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 (안 제9조)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세대 이상 공동주택
 -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 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기준 완화 ----- (안 제12조)
 -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 :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 → 3/1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신설) ----- (안 제13조)

3. 관련법규 ----- 별 칙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4 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3 장 사회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 6 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 7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8 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 9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궤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제 6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천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 부천시궐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 3 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천시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한
				7일
법 인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합 계			
감 면 사 유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제 조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신·구조레대비표

현행조례	대체조문	주요골자	비고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자활용사촌내 소유 부동산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면제 •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 자동차세 → 면제	존치
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 : 국가유공단체 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단체소유 임대 기타 수익 사업용 부동산 : 재산세, 종합토지 세, 도시계획세 → 면제	존치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 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제4조 : 장애인소유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 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자동차세 → 면제	존치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 례	제5조 : 종교단체의 의 료업에 대한 감면	•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 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면제	존치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		•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 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면제 • 폐지사유 : '95. 1. 1부터 중기(건설 기계)가 등록세로 전환되고 우리시 의 경우 실험·실습용 항공기 및 선 박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폐지	폐지

헌 행 조 례	대 체 조 문	주 요 골 자	비고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6조: 사회교육시설 에 대한 감면	•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면제 • 면제대상 추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존치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 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 조례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주거용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 재산세 →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 1000분의 1 종합토지세 →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	존치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	제8조: 농어촌주택개 량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 재산세, 종합토지세 → 5년간 면제	존치
	제11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 농지세 → 면제 • 마을공동작업용 주민공동체 소유자 동차: 자동차세 → 면제	
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 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 재산세 → 세액의 100분의 50경감 종합토지세 → 1000분의 3 •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제	존치

현행조례	대체조문	주요골자	비고
	제10조 :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 5년간 세액의 100분의 50경감 종합토지세 → 5년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 우리시의 경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됨 (동조례 제10조 제1항 제4호)	신설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2조 : 주차장에 대한 감면	•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 → 5년간 면제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 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함) :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5년간 면제	존치
	제13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신설

현행조례	대체조문	주요골자			비고
궤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4조 : 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궤형자동차 : 자동차세 → 불균일과세(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함)			존치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5조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 :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존치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6조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총자산중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 → 면제 • 동 공사에 종사한 종업원의 급여 : 사업소세(종업원합) → 면제 • 주민세 → 면제			존치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기세정13430-12('95. 1. 4)호와 동세정13400-328('95. 2. 20)호에 의거 조례준칙(안) 시달로 부분개정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납기한 외에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안 제7조).
-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합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15조)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합)와 사업소세(재산합)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정함(안 제16조, 제61조).
- 1994년달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적으로 제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별도의 장(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5. 3. 1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경기세정 13403-12('95. 1. 4)호와 동세정 13400-328('95. 2. 20)호에 의거 조례준칙(안) 시달로 부분개정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납기한 외에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안 제7조)
-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합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함. (안 제15조)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합)와 사업소세(재산합)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정함. (안 제16조, 제61조)